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721976			
등록번호	110111-7219763			
상호 출	주식회사 루나써클 (	Lunar Circle Co., Ltd.)		
본 점 🕹	<del>서울특별시 강남구 E</del>	<del>내해란로 302, 11층 100호(역삼동, 위워크타워)</del>		
<del>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42, 409호(역삼동)</del>			2020.07.03 변경 2020.07.16 등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42, 501호(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 동)	· - - - - - - - - - - - - - - - - - - -	2021.04.01 변경 2021.04.01 등기	
공고방법	다. 다만, 전산장이	메이지(http://www.microbeautylabs.com)에 게재한 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 할 수 없는 때에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재한다.		
1주의 금액 금 500 원				
발행할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sup>-</sup>	· 수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 주		
보통주식	100,000 全	<del>금 50,000,000 원</del>	· · ·
발행주식의 총수	<del>160,000 주</del>		2020.11.05 변경
보통주식	<del>160,000 주</del>	<del>금 80,000,000 원</del>	2020.11.1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76,890 주		2021.03.30 변경
보통주식	168,001 주		2021.04.01 등기
제1종상환전환우선주식	8,889 주	금 88,445,000 원	

목 적

- 1. 화장품 제조업
- 1. 화장품 판매 및 도소매업 1. 화장품 제조 및 판매 관련 컨설팅업
- 1. 화장품 판매채널지원 및 마케팅
-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상품기획업

- 1.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 1.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무역 및 무역중개업
- 1.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수출입업
- 1. 각종 상품 무역 및 무역 중개, 수출입업(오퍼상)
- 1. 통신판매업
- 1. 전자상거래업
- 1.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
-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
- 1. 위 각 호와 관련된 연구소 설치
- 1. 위 각 호와 관련된 연구개발업 일체
- 1.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1. 위 각 호와 관련된 무대 사업 일제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김현정 771124-*****					
2020 년 07 월 03 일 사임   2020 년 07 월 16 일 등기					
대표이사 김현정 7711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04-7, 3층 에이호(망원동)					
대표이사 김현정 771124-*****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34길 31, 201호(후암동, 정우빌라)					
2019 년 09 월 16 일 주소변경 2020 년 07 월 16 일 등기					
2020 년 07 월 03 일 사임 2020 년 07 월 16 일 등기					
<del>사외이사 조개현 751206-*****</del>					
2020 년 07 월 03 일 사임 2020 년 07 월 16 일 등기					
사내이사 이재연 840710-*****					
2020 년 05 월 14 일 취임 2020 년 05 월 27 일 등기					
대표이사 이재연 84071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18, 103동 1905호(옥수동, 옥수삼성					
아파트)					
2020 년 05 월 14 일 취임 2020 년 05 월 27 일 등기					
<del>사내이사 조재현 751206-******</del>					
2020 년 07 월 03 일 취임 2020 년 07 월 16 일 등기					
2021 년 03 월 29 일 사임   2021 년 04 월 01 일 등기					
<del>사내이사 한정수 710422-******</del>					
2020 년 07 월 03 일 취임 2020 년 07 월 16 일 등기					
2021 년 03 월 29 일 사임   2021 년 04 월 01 일 등기					
사외이사 조재현 751206-*****					
2021 년 03 월 29 일 취임 2021 년 04 월 01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한정수 710422-*****					
2021 년 03 월 29 일 취임   2021 년 04 월 01 일 등기					

####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상환전환우선주식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2.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721976

3.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단, 이익배당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상환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익배당이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위존속기간은 연장된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0%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2.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1.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4%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 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2. 만약 회사가 향후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신규 투자자에게 청산 등에 대하여 본건 계약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신규 투자자가 보유하게 되는 신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적 권리를 투자자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전환권에 관한 사항)
- 1. 신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동안 신주의 주주에 의한 전환청구가 있게 되면 그 10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전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보통주로 전환된다.
- 2.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 대 보통주의 비율을 1 대 1로 한다. 전환주식의 전환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 대상인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 전환가격)으로 계산된 수에서 단주를 절사하여 확정한다.
- 3. 피투자기업이 본건 우선주의 발행이후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 4.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x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단,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일주당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 5.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투자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

721976

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상환 재원을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 3.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4%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4.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리1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21 년 03 월 30 일 설정 2021 년 04 월 01 일 등기

### 기 타 사 항

1. 주식의 양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정관 제 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제1호 이외의 경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2)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721976

행사하는 자

-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정관 제14조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 제14조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성립연월일

2019 년 08 월 29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9 년 08 월 29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열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일시 : 2021년04월28일 10시42분20초